
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 서

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

전문위원 라 도 균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☐ 제출일자 : 2006년 6월 14일

☐ 제 출 자 : 김성배 의원 외 4인

2. 위원회 회부

☐ 회부일자 : 2006년 6월 14일

☐ 상정일자 : 2006년 6월 15일

<제16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>

3. 개정이유

☐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(법률 제7935호, 2006.4.28 공포)되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가 개정(2005.12.29 공포)되어 우리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(17인→11인, 6인 감소)하는 등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☐ 법 개정으로 조례명을 “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”에서 “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”로 한글 맞춤법에 따라 변경

☐ 각 상임위원회 정수 “8인”을 각각 “5인”으로 조정(안 제2조)

☐ “징계자격특별위원회”를 “윤리특별위원회”로 조정(안제3조·제7조)

☐ 특별위원회 정수 “8명”을 “5인”으로 조정(안 제8조제2항)

4. 검토의견

□ 지방자치법 개정과 의원정수 조정에 따라 우리구의회 의원정수가 2006. 7. 1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5대의회부터 17명에서 11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수를 조정하고 또한, 기타 사항등을 관계법령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

□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위원회 설치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, 위원회 설치 수와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의원수가 적어 현행 3개 위원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

□ 위원회 의원정수는 위원회별로 8인으로 구성하되 겸임(시민행정위원회, 재무건설위원회) 운영할 수 있으나, 이는 위원회 회의를 1일 1회 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법령하에서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, 개정(안)대로 3개위원회별로 위원 정수를 5인으로 하는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됨.

□ 특별위원회로 “징계자격특별위원회”가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“윤리특별위원회”로 변경되면서 법 제3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조례로 제정하여야 함

□ 법 제5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(전문위원)을 두어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,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에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자료의 수집·조사·연구를 행하도록 하고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, 추후(6월중) 대통령령에서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를 확정하면 이에 따른 전문위원확보가 요구됨

5. 관련법령

- ☐ 지방자치법 제34조의3
- ☐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
- ☐ 지방자치법 제50조의2
- ☐ 지방자치법 51조의2
- ☐ 지방자치법 제54조
- ☐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

6. 참고사항(각구별 의원정수)

연번	구의회 명	의원정수	지역구의원	비례대표	비고
1	중 구	9	8	1	
2	용산구	13	11	2	
3	성동구	15	13	2	
4	광진구	14	12	2	
5	동대문구	18	16	2	
6	중랑구	17	15	2	
7	성북구	22	19	3	
8	강북구	14	12	2	
9	도봉구	14	12	2	
10	노원구	22	19	3	
11	은평구	18	16	2	
12	서대문구	16	14	2	
13	마포구	18	16	2	
14	양천구	18	16	2	
15	강서구	20	18	2	
16	구로구	16	14	2	
17	금천구	10	9	1	
18	영등포구	17	15	2	
19	동작구	17	15	2	
20	관악구	22	19	3	
21	서초구	15	13	2	
22	강남구	21	18	3	
23	송파구	24	21	3	
24	강동구	18	16	2	